

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의료, 수사, 상담 등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,
- 나. 의료행위, 수사조사, 치유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, 전문성과 노하우,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시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인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.

-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, 수사조사, 치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,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의료행위, 수사조사, 치유상담 등을 통합지원함으로써
-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

라. 사업개요

- 소재지 :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
- 규모 : 건물 99.55㎡
- 지원시설 : 사무공간(39.89㎡), 상담실(7.61㎡), 모니터실(6.51㎡), 진술녹화실(9.47㎡), 진료실(13.02㎡), 피해자안정실(6.50㎡), 대기실(4.32㎡), 탕비실(7.82㎡), 화장실(4.41㎡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18.1.1. ~ 2020.12.31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34,486천원(2018년)

※ 여성가족부 국비50% 시비50% 매칭사업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306,107천원, 관리운영비 15,379천원, 사업운영비 4,600천원, 부대비용사업비 6,000천원, 시설비 2,400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18조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, 수사지원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이계원(☎ 2133-5035)